

총괄 CEO 후보추천위원회 규정



주식회사 풀무원

제 1 장 총 칙

제 1 조(목적)

- ① 이 규정은 정관 제37조의2 및 이사회 규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총괄CEO후보추천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② 위원회는 총괄CEO로 적합한 후보자를 선별하고 추천하며 공정한 절차를 거쳐 검증한다.

제 2 조(역할 및 권한)

- ① 위원회는 이사회가 위임한 권한과 역할에 따라 총괄CEO 후보 선발기준을 수립하며, 관련 법령 및 내부 규정 등에서 정한 전문지식, 업무경험, 리더십, 소통능력, 도덕성 등의 자격요건 및 필요 역량을 갖춘 회사의 총괄CEO 후보를 심사·선정·추천하고, 회사 경영의 연속성 및 안정적인 경영승계를 위해 경영승계계획을 승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.
- ② 위원회는 총괄CEO 후보와 특수관계에 있는 기업(회사 및 계열회사를 제외한다. 이하 같음)이 회사 및 계열회사와 거래가 있는 경우 회사 또는 해당 계열회사의 대표이사로 하여금 거래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보고하도록 하여 이를 검증하고, 동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한다.

제 2 장 구 성

제 3 조(구성)

- ① 위원회의 위원(이하 "위원"이라 한다)은 이사회에서 선임한다.
- ② 위원회는 5인의 이사로 구성한다.
- ③ 이사회 의장 및 총괄CEO 대표이사는 당연직 위원으로 선임한다.
- ④ 제3항의 당연직 위원 2인을 제외한 위원은 독립이사로 선임한다.
- ⑤ 단,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위원회의 구성을 달리 정할 수 있다.

제 4 조(위원장)

- ① 위원장은 위원회 결의로 선임한다.
-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별로 업무를 분장하게 할 수 있다.
- ③ 위원장 유고 시 각 호의 순서로 직무를 대행한다.
 - 1. 총괄CEO 대표이사
 - 2. 독립이사 중 가장 먼저 위원으로 선임된 이사
 - 3. 제2호에 해당하는 이사가 복수일 경우 연장자

제 3 장 회 의

제 5 조(소집 및 소집절차)

-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 위원장 유고 시에는 제4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.
- ②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. 다만,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소집을 청구한 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.
- ③ 위원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7일 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한다. 그러나,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.

제 6 조(결의방법)

- ① 위원회의 결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.
- ②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·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.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.
- ③ 위원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며, 당해 위원은 출석위원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
제 7 조(추천절차)

- ① 위원회는 회사, 주주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자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총괄CEO 후보로 추천하여야 한다.
- ② 위원회는 총괄CEO 예비후보자가 관련 법령 및 내부 규정 등에서 정하는 전문지식, 업무경험, 리더십, 소통능력, 도덕성 등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공정하게 검증한 후 총괄CEO 후보를 추천하여야 한다.
- ③ 위원회는 총괄CEO 후보군 탐색 시 필요한 경우 주주, 이해관계자 및 외부 자문기관 등 회사 외부로부터의 추천을 활용할 수 있다.
- ④ 위원장은 총괄CEO 후보 추천 과정에 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최종 후보안을 정리하고, 이를 위원들에게 설명한 후 이사회에 상정하여야 한다.
- ⑤ 위원회는 총괄CEO 후보 추천을 위한 세부 추천절차를 정할 수 있다.

제 8 조(총괄CEO 후보 인선 자문단 운영)

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총괄CEO 후보 인선 자문단을 설치·운영할 수 있으며 총괄CEO 후보의 모집·조사·검증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.

제 9 조(부의사항 등)

① 위원회는 이사회의 위임에 따라 아래 사항을 결의한다.

1. 총괄CEO 후보 추천 절차
2. 총괄CEO 역할 및 역량 설정
3. 총괄CEO 후보군 수립 및 검증
4. 총괄CEO 후보의 추천

② 위원회에 보고할 사항은 다음 각 호로 한다.

1. 총괄CEO 후보군 육성
2. 그 밖에 위원회 운영 등 중요사항 전반

③ 위원회는 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제 10 조(관계인 출석)

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내부 또는 외부 관계인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제 10 조의2(외부 자문 등)

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사로부터 독립된 법률고문, 자문위원 등을 선임하거나 외부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으며, 회사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에 소요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.

제 11 조(의사록)

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

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, 경과요령, 그 결과,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 전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.

제 12 조(위원회 지원조직)

① 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해 간사를 둔다.

② 간사는 인사기획실장이 되며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한다.

③ 위원회의 사무는 이사회 규정 제16조에 따라 이사회사무국과 협의하여야 한다. 이사회사무국은 간사 조직과의 협력을 통해 위원회 사무 전반을 지원한다.

제 13 조(규정의 개정 등)

이 규정의 제정 및 개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.

부 칙 (1)

이 규정은 2017. 10. 24. 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2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6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독립이사에 관한 경과조치) 제3조 제4항 및 제4조 제3항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.